

**혼잡수준 결정기준** (제15조제1항 관련)

1.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 
가. 도시고속도로

(단위: km/h)

편도 4차로 이상
30 미만

- 나. 간선도로

(단위: km/h)

편도 4차로 이상	편도 3차로 이하
21 미만	15 미만

2. 차량당 평균 제어(또는 운영)지체시간에 따른 교차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

(단위: 초)

신호교차로(평균제어지체시간)	무신호교차로(평균운영지체시간)
100 이상	50 이상

비고: 차량당 평균제어(또는 운영) 지체시간이란 도로용량편람(국토교통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)의 차량당 평균 제어(또는 운영) 지체를 말한다.